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제안이유
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(법률 제7100호, 2004. 1. 20)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·주선사업허가 등 도지사 권한의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의 사무로 변경되고
-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시장·군수 권한의 사무가 도지사 권한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·주선허가 등 12개 사무 삭제  
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등 관련 수수료 신설
- 사용(신규·변경) 신고 : 1건당 1,400원
  -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: 1건당 1,400원

### □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### 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### □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제2호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 자목 교통관계 소관 (1) 내지 (12)를 삭제하고, (1) 내지 (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준	요액
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		
자. 교통관계		
(1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(신규·변경)신고	1대	1,400원
(2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신청 또는 임대허가신청	1대	1,400원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구조문대비표

[별표 2]

##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

(단위 : 원)

현 행			개 정 (안)		
구 분	기준	요액	구 분	기준	요액
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시설확인 등			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시설확인 등		
자. 교통관계			자. 교통관계		
(1)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	1건	14,000(기본금액에 차량 1대당 2,000원씩 추가합산)	<삭 제>		
(2)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등록신청	1건	5,000(기본금액에 차량 1대당 2,000원씩 추가합산)	<삭 제>		
(3)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	1건	2,000	<삭 제>		
(4)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 업소등록신청	1건	14,000(기본금액에 차량 1대당 2,000원씩 추가합산)	<삭 제>		
(5)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또는 운송주선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	1건	2,000	<삭 제>		
(6) 화물자동차운송사업(운 송주선사업)의 양도· 양 수 또는 법인합병신고 (동법 제14조 및 제24조)	1건	3,000	<삭 제>		

현행			개정(안)		
구분	기준	요액	구분	기준	요액
(7) 화물자동차운수사업(운송주선사업)의 상속신고	1건	3,000	<삭제>		
(8) 화물자동차운수사업(운송주선사업)의 휴지·폐지신고	1건	1,400	<삭제>		
(9)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	1건	16,000	<삭제>		
(10)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	1건	1,400	<삭제>		
(11)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설치신고	1건	14,000	<삭제>		
(12)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	1대	1,400	<삭제>		
<신설>			(1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(신규변경)신고	1대	1,400
<신설>			(2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 또는 임대허가신청	1대	1,400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(법률 제7100호, 2004. 1. 20)】

第38條 (自家用貨物自動車使用申告)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自家用으로 사용되는 貨物自動車(이하 "自家用貨物自動車"라 한다)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を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시·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[개정 2004.1.20]

第39條 (有償運送의 금지) 自家用貨物自動車の 所有者 또는 使用者는 自家用貨物自動車を 有償(당해 自動車の 運行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)으로 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·도지사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2004.1.20]

第47條 (手數料) ①이 法の 規定에 의하여 허가·인가 등을 申請하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건설교통부령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託된 경우에는 당해 受託機關이 정하는 手數料를 해당 受託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. [개정 2004.1.20]